

「대여금고 약관」 개정 신규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 7 조(임의열람) ① 회사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입고물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. 1. 화재,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경우 2.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3. <u>대여금고의 수리, 금고이전 등 기타 금고의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회사의 입고물품 수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	제 7 조(<u>금고</u> 임의열람) ① 회사는 임차인의 요청 <u>또는 승인</u>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입고물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. 1. 화재,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경우 2.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3. <u><삭제></u> 3. 회사의 입고물품 수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	제1항 제3호 삭제
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	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	